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528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곽경화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인재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0. 3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94,837원 및 그 중 29,510,532원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2. 1.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12. 접수 제25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21. 10.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0. 28.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6. 10. 2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C에 보증번호 D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 A은 2022. 4. 22. C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8. 25. C에 30,202,594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25. 피고 A으로부터 692,06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금은 29,510,532원(= 30,202,594원 ~ 692,062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51원이며,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584,154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은 2022. 1. 1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22. 1.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25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30,094,837원(= 대위변제잔금

29,510,532원 + 확정손해금 151원 + 대지급금 584,15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29,510,5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5.

31.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22.

8. 25.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21. 10. 28.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만인 2022. 4. 22. 피고 A이 C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2. 8. 25.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갑 9,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사단법인 E과 남대구세무서장이 회신한 문서 포함)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가액이 대략 188,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별지2 소극재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89,912,470원의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F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 B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A은 부동산관련 대부업에 종사하는 H, G을 통하여 피고 B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 B은 2022. 1. 11. G의 배우자인 1의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A에게 14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연 20%로 약정한 사실, G은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고율의 이자약정 및 과도한 대출수수료 지급 등)에 비추어 거래조건이 정상적이라거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영

별지